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86호

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「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96호, 2026. 4.3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6년 9월 4일

보건복지부 장관

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

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별표와”를 “별표 1과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 지역의 지정) 영 별표 2 제2

호가목 비고에서 “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”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.

별표를 별표 1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 지역(제4조의2 관련)

연번	시·도	학교군	걸친 진료권	학교군에 해당하는 지역
1	충청북도	충북혁신도시 후기고등학교군	충청북도 청주권(진천군) 충청북도 충주권(음성군)	진천군 덕산읍 음성군 맹동면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4조(지역별 선발 비율) 영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별 세부 선발 비율은 <u>별표와</u> 같다. <u><신 설></u>	제4조(지역별 선발 비율) ----- ----- ----- <u>별표 1과</u> --. <u>제4조의2(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</u> <u>친 학교군 지역의 지정) 영 별</u> <u>표 2 제2호가목 비고에서 “보건</u> <u>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</u> <u>의하여 고시하는 지역”이란 별</u> <u>표 2의 지역을 말한다.</u>